「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의의

이 의 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eslee@cerik.re.k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드디어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및 서민금융과관련한법률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률 15개 중 6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은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일부개정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

금융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 또는 중개해주고,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자유스럽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국가에 비하여 불합리 또는 과도한 규제가 있고, 이러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 제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컨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게다가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하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법 체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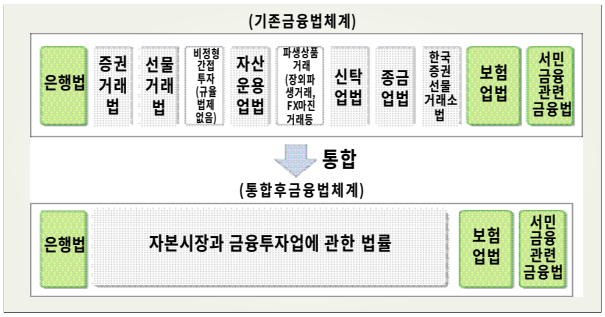

금융 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유가증권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유가증권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1개로 정의하고 있고,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는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의 4가지로 국한하고 있다. 한편,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거래의 종류를 일반상품 및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지수선물, 선물옵션, 옵션 및 지수옵션의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금융상품을 만들고 취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고자 할 때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사전적으로 불명확하므로 금융 혁신을 제약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의 열거주의는 투자자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면 어떠한 법령도 그 금융상품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최대한 넓게 정의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개발을 제약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제거하였다. 이 법에서는 투자성, 즉 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

징을 갖는 모든 금융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 투자 상품 을정의하고있다. 이렇게금융투자상품을추상적으로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금융 상품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므로 금융투자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투자자보호제도가적용되는효과를가지게된다.

‘ 금융 투자 상품 의 정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정의하고있다. 이상품은기존의법령에의한유가증권과파생 상품을포괄하는상위의개념이다.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금융 상품을 총칭함으로써 예금이나 보험과 같은 여타 금융 상품과 대비시키고, 자본시장관련 상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위한목적을가진다.

「자본시장통합법」은금융투자상품을①이익을얻거나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③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을부담하는 것을‘ 금융 투자 상품 ’으로 정의하고있다(법제3조).

금융 투자 상품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특징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회피할목적 ’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항공사가소비를 위하여 정유회사와 항공유 매입에 관한 선도 계약(forward contract)을체결하는것은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되고,「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익을얻기 위한 것이아니라발생가능한사고의위험에대비하기위한목적을지닌 보험 역시 금융 투자 상품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특징은 금융 투자 상품이‘ 현재또는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 ’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은계약상의권리로투자성을가지지만권리가아닌실물에투자하는부동산같은경우금융투자상품이아니다. 세번째특징은원본손실가능성, 즉투자성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은행예금은금융투자상품이아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의 원본 이하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회수금액에회수불능금액을포함하여원본손실이없는것으로 정하고있기때문에금융투자상품이아니다.

기능별 규율 체계의 도입

현행자본시장관련법령체계는금융회사를중심으로규율하는 기관별 규율 체계이다.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등금융회사별로 법률이 존재하여각금융회사가영위할수있는금융업무를열거하여규제하고있다. 이렇게각법률이금융업에대하여독자적인규제를두고있다보니금융회사별로상이한규율이적용되고있다. 이러한상이한규율체계의적용으로금융회사에따른규제차익이 생기고, 투자자보호의공백이발생하는문제점이생긴다.

「자본시장통합법」은금융회사별로규율하던기관별규율체계를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을동일한방식으로규율하는 기능별규율체계로전환하여규율방식을체계적으로정비하였다. 기능별 규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업무의경제적 기능 또는실질을기초로 한 규제를의미한다. 어떠한금융회사가 수행하더라도그업무가동일한경제적기능이나성질을가진다면동일한규율을적용받는다. 이는금융회사간의형평성을맞추어공정한경쟁이가능하도록유도하게되고규제의공백으로인하여 투자자보호에공백이생기는것을방지한효과가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은투자자보호를대폭강화하였다. 예를들어, 투자권유시상품의내용과위험을상세하게설명하도록요구하는설명의무의경우판매회사의설명의무위반으로투자자가원본손실을입게되면원본손실액만큼을판매회사가배상해야할손해액으로추정한다. 특히, 새롭게도입되는적합성(suitability) 원칙은고객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과 동떨어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를 늘리기 위하여 부적절한 상품을 권유하는기존의잘못된관행들은상당부분억제될전망이다.

기대 효과

이와같은내용의「자본시장통합법」이시행되면기업은주식, 채권 이외에도 다양한 신종 증권을 통하여 자금 수요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다양한파생 상품의 등장으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헤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자본시장내에서 다양한 위험과 수익의 조합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투자 상품의 출현이 가능해짐에 따라투자자의수요에부합하여자금을운용할수있게될것이다. 따라서경제내에여유자금이자본시장으로안정적으로유입될 수있는여건이조성될것이다.

향후우리경제가성장을하기위해서는혁신산업과모험산업의성장이필수적인데금융투자상품의포괄주의는혁신형중소기업이선택할수있는자금조달의폭을확대시킴으로써경제에 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것이다. 건설업분야에서는개발형프로젝트특성에부합되는여러가지금융투자상품이개발되어개발프로젝트에대한자금조달이다양화될수있을것이다.